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9590      |
| 의 퇴 인  | 이정현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 | 2026. 8. 20. |
| 추 계 번호 | 26C3151      |

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6조의4<br>(외국 체류자의<br>개별가구 제외 등)<br>제2항 |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사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사업 또는 해외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*에서 제외함<br>※(이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때, 조사의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함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6조의4<br>(외국 체류자의<br>개별가구 제외 등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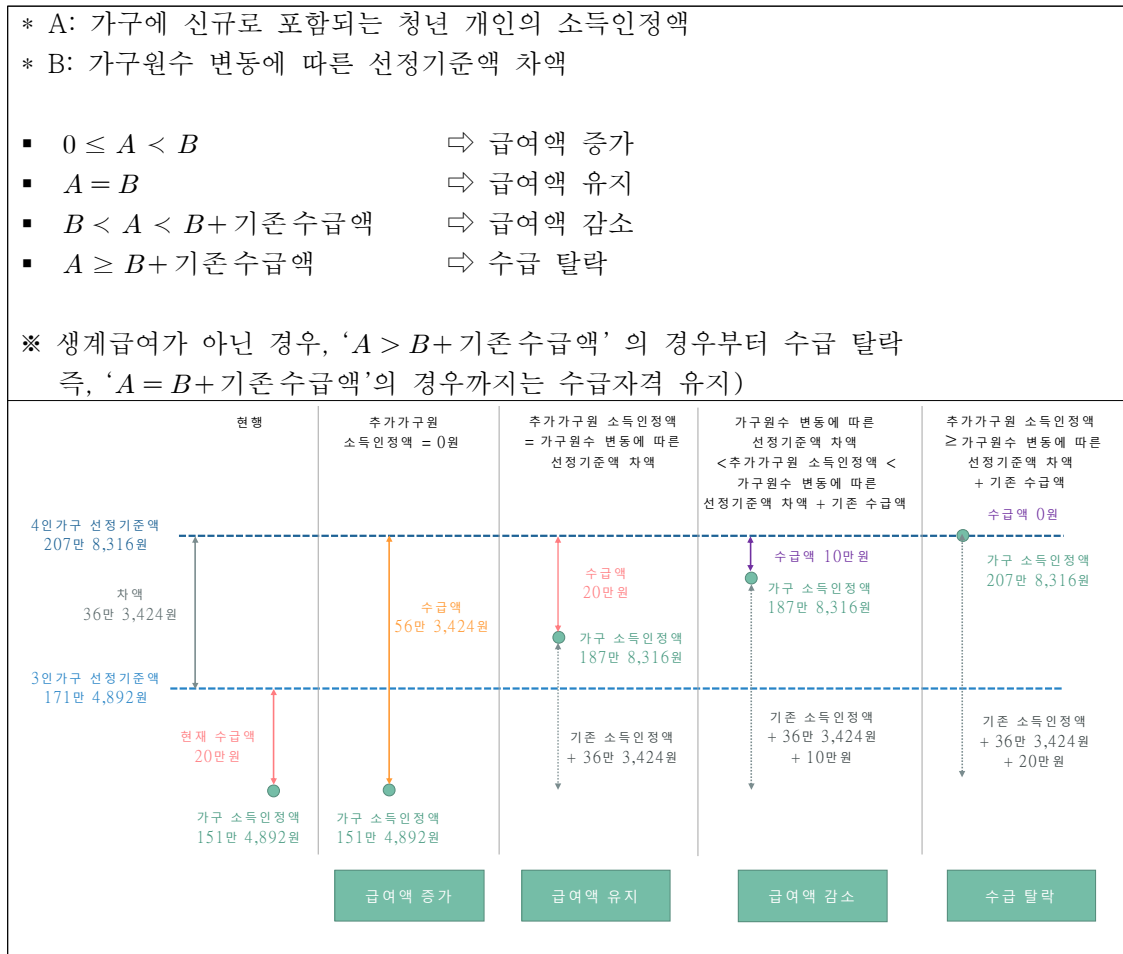
- 개정안에 따라 일부 해외 체류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, 현행법상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던 해외 체류자가 개정안 시행 시 개별가구에 포함될 경우, 가구원 수 증가로 급여 선정기준액이 상승하는 동시에 새롭게 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·재산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, 선정기준액 증가분과 신규 포함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

- 현재 이 법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등은 가구원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
  - －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<sup>1)</sup>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,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차등이 있음
- 현재 이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사 시작일부터 180일 이전까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통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가구에서 제외됨
- 개정안에 따라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사업에 참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 또는 해외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고려하지 않을 경우, 해당되는 청년 중 일부(관련 체류 기관을 제외한 외국 체류 기간이 60일 이하인 청년)가 개별가구에 포함될 수 있음
-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장가구원 수가 변동되는 가구별 급여의 증감여부는 급여의 종류, 해당 가구 및 가구에 신규로 포함되는 청년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짐
  - － 특히,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산정되므로, 가구원의 추가에 따른 생계급여액 변화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
- \* 예를 들어, 기존 3인 가구로 인정받는 가구가 개정안에 따라 신규 가구원이 추가되어 4인 가구로 변경되는 경우,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36만 3,424원 증가함. 따라서, 신규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월 36만 3,424원보다 ① 적으면 해당 가구가 수급하는 생계급여액은 증가하고, ② 동일하면 급여액은 변동하지 않으며, ③ 이를 초과하면 생계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

---

1)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%,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%,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%,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

[표 1] 가구에 신규로 포함되는 청년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액 변화

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신규로 가구원 수에 포함될 사람의 수와 이들의 소득·재산 정보, 급여별 수급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고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경우의 규모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○ 안 제6조의4 제2항은 외국 체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개정법률이 적용될 구체적인 경우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알 수 없음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# 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김우림 | 문지은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|
| 김우림 | 02-6788-3738 | wrkim@nabo.go.kr |